

독일

민헨제1지방법원: 음악생성 AI Suno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판결 (LG München I, Endurteil vom 31.07.2026, 42 O 763/25)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1. 개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이하 '법원')은 2026년 7월 31일 AI 음악생성기(Musikgenerator) Suno의 운영자에 대하여 독일과 미국 양국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다. 독일에서는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Memorization) 그 자체가 복제에 해당하고,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의 제공 및 생성된 Output도 복제와 공중전달이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미국에서는 모델학습을 위하여 이루어진 복제가 공정이용(fair use)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미국에 소재하면서 AI 기반 음악생성기 Suno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독일 음악관련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GEMA로서 “Atemlos durch die Nacht”, “Daddy Cool”, “Rasputin”, “Big in Japan”, “Forever Young”의 다섯 음악저작물과 “Mambo No. 5 A little bit of”의 후렴 부분에 관한 권리를 근거로 침해금지, 정보제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문제된 Suno의 음악생성기 버전은 v3.5와 v4였다.

이 판결의 특징은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물 이용을 단순히 하나의 ‘AI 학습’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저작물이 이용되는 단계와 형태를 구별하여 판단한 데 있다. 법원은 학습자료를 추출·가공하여 학습데이터(Training Data)를 작성하는 단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Prompt와 Output을 통하여 이용하는 단계를 구별하였다. 특히 모델학습(Model Training)의 결과 특정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이 모델 내부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기억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학습자료의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와 구별하여 별도로 검토하였다.

법원은 문제된 음악저작물이 피고의 모델 내부에 기억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Memorization)을 독일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의 복제로 평가하였다. 다만 AI 모델학습 자체가 TDM 제한사유의 적용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이 사건에서 모델 내부에 남은 복제는 TDM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가 아니어서 저작권법 제44b조 및 DSM 지침 제4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YouTube의 Rolling Cipher¹⁾를 우회하여 학습저작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도

1) Rolling Cipher는 YouTube가 콘텐츠의 영구적 다운로드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실제 음원·영상 파일의 저장위치를 가리키는 URL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다. 법원은 이를 저작권법 제95a조 제2항 제1문의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로 보고, 그 우회를 통해 취득한 학습자료에는 TDM 제한사유가 요구하는 적법한 접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n. 308-310). 여기서 “Rn.”는 Rannummer의 약어로서 이 판결문의 단락번호(또는 방주번호)를 말한다.

적법한 접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원은 모델과 음악생성기의 제공 및 생성된 Output과 관련한 복제와 공중전달의 성립 및 피고에의 귀속을 각각 검토하였다.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이용제공²⁾은 부정하였지만, 제15조 제2항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공중전달”(unbenannte öffentliche Wiedergabe)을 인정하였고, 문제된 Output에 나타난 보호되는 음악적 요소에 대해서도 복제와 공중전달 침해를 인정하였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습목적 복제에 대해서는 미국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공정이용(fair use)을 검토하였으며, AI 모델학습이 일반적으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³⁾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학습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Output이 생성되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fair use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은 이에 따라 독일 및 미국에서 문제된 각 침해행위에 관한 금지청구와 그에 따른 정보제공·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였다.⁴⁾

한편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신청한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한 선결 제청도 거부하였다. 이는 이 판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절차적 배경이 된다.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

(1) 피고의 음악생성기와 문제된 음악저작물

피고는 미국에 소재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악생성기 Suno를 개발·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서비스는 미국에서 호스팅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독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제공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음악생성기의 버전은 v3.5와 v4였다. 이용자는 Prompt를 입력하여 음악을 생성할 수 있었으며, 생성된 음악은 웹사이트에 내장된 미디어플레이어로 재생하거나 공개·공유할 수 있고 MP3, WAV 또는 MP4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었다. 판결에 따르면 서비스에는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 모델(generative vortrainiertes Transformer-Modell)⁵⁾과 확산모델(Diffusions-Modell)⁶⁾이 포함되어

2)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중접근”이라고도 한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의 “전송”에 대응한다.

3)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은 원저작물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와 다른 목적이나 성격을 갖도록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첫 번째 요소에서 고려된다. 다만 변형성만으로 fair use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이용의 목적 및 성격과 상업성 등을 함께 판단한다.

4) 금지청구는 소송대상인 여섯 음악저작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정보제공 및 손해배상청구는 “Atemlos durch die Nacht”, “Rasputin”, “Daddy Cool”과 “Mambo No. 5 A little bit of”의 후렴에 한정되었다. 이는 원고가 이 네 저작물에 대해서는 추가약정을 통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이전받은 반면(Rn. 212-214), “Big in Japan”과 “Forever Young”에 대해서는 공동저작자 FM과 추가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다른 공동저작자들로부터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수권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Rn. 5, 211).

5)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GPT) 모델은 학습된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토큰의 확률을 계산하여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신경망 모델이다. 동일한 입력과 파라미터에서는 동일한 확률분포가 계산되지만, 실제 토큰의 선택단계에서는 무작위성이 개입할 수 있다(Rn. 10).

있었다. 이 모델들은 결정론적으로 작동하는 신경망(neuronale Netze, die deterministisch sind)⁷⁾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는 무료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무료이용은 비영리적 이용을 전제로 하루 10곡을 생성할 수 있었고, 월 10달러의 유료구독은 월 500곡, 월 30달러의 유료구독은 월 2,000곡을 생성할 수 있었다. 유료구독자에게는 생성된 음악에 대하여 상업적 이용까지 가능한 이용권이 부여되었다. 2024년 5월까지 1,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2024년 10월 한 달 동안에는 221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였다(Rn. 20, 21). 생성된 Output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직접 URL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Rn. 22).

문제된 음악저작물은 “Atemlos durch die Nacht”, “Daddy Cool”, “Rasputin”, “Big in Japan”, “Forever Young” 및 “Mambo No. 5 A little bit of”이었다. 마지막 작품의 경우 전체 작품이 아니라 후렴 부분에 관한 권리가 문제되었다. 원고는 작곡가·작사가 및 음악출판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이용권을 관리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GEMA였다.

(2) 학습데이터의 취득과 모델학습

피고는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완전한 음원과 관련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하였으며, 문제된 여섯 음악저작물도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YouTube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을 stream-ripping 방식으로 추출·복제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구적인 다운로드를 제한하기 위하여 YouTube가 적용한 Rolling Cipher를 우회하였다.

학습과정에서는 음원의 변환·포맷변경·특징추출·스펙트로그램 작성 등의 사전처리(preprocessing)가 이루어졌고, 학습·검증·테스트 데이터셋도 작성되었다. 제목·장르·가사 등의 메타데이터는 음원과 결합되었으며, 데이터는 토큰(token)과 벡터(vector)의 형태로 변환되었다. 학습데이터는 백업 및 보안용 복제물로도 저장되었다.

모델학습 과정에서는 처음에 임의로 설정되어 있던 파라미터(parameter)가 학습데이터에서 얻은 수치적 벡터(vector)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계산을 거쳐 조정되었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가중치(weight)는 이른바 ‘학습된 지식’을 구현하였지만, 원래의 오디오파일 자체가 음원파일의 형태로 모델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는 모델을 독일 내 Edge Server⁸⁾에 저장하였고, 생성 중인

6) 확산모델(diffusion model)은 잡음이 포함된 데이터에서 잡음을 반복적으로 추정·제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로, 학습을 통하여 실제 신호와 잡음을 구별하도록 형성된다(Rn. 11).

7)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부상태·파라미터·입력에서는 신경망 자체가 동일한 계산결과를 산출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후속하는 확률적 선택·무작위화 과정 때문에 동일한 Prompt에서도 최종 Output은 달라질 수 있다(Rn. 10, 11, 259).

Output도 Edge Server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생성이 완료되기 전부터 이용자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Rn. 25).

(3) Prompt와 문제된 Output

원고의 직원과 소송대리인들은 문제된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원래 가사, 곡명 및 일반적인 음악스타일을 음악생성기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멜로디, 화성, 리듬 또는 편곡과 같은 구체적인 음악적 내용은 Prompt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Atemlos durch die Nacht”에는 “Schlager”⁹⁾, “Daddy Cool”에는 “70s, Disco, Electronic, Soul, Funk”, “Rasputin”에는 “Disco, late 70s”, “Big in Japan”과 “Forever Young”에는 “80s, Synth pop, male voices”, “Mambo No. 5 A little bit of”에는 “Latino Pop”이라는 일반적인 장르 또는 스타일을 지정하였다.

문제된 Output을 얻는 과정에서 동일한 Prompt는 여러 차례 입력되었다. “Atemlos durch die Nacht”에 대해서는 176회, “Daddy Cool” 14회, “Rasputin” 8회, “Big in Japan” 124회, “Forever Young” 12회, “Mambo No. 5 A little bit of” 4회의 동일한 Prompt가 각각 입력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제된 음악저작물이 피고의 모델 내부에 기억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 자체가 독일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에 따르면 학습데이터의 내용이 모델 파라미터에 수용되어 이후 Output으로 다시 재현될 수 있다면 기억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원저작물과 생성된 Output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델 파라미터에서 개별 저작물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직접 분리·확인할 수 없더라도, 모델을 통하여 보호되는 표현을 다시 지각할 수 있다면 모델 내부의 복제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이러한 모델 내부의 복제가 저작권법 제44b조의 TDM 제한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은 더 이상의 데이터분석을 위한 복제가 아니므로 TDM의 범위를 벗어나며, 피고가 YouTube의 Rolling Cipher를 우회하여 문제된 음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제44b조가 요구하는 적법한 접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는 기억된 음악저작물을 포함하는 모델 및 음악생성기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19a조의

8) Edge Server는 이용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네트워크의 말단(edge)에 배치되어 콘텐츠를 저장·처리함으로써 데이터 전송지연(latency)을 줄이고 빠른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서버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외부 사업자가 전세계에 보유한 Edge Server를 이용하였고, 독일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모델을 독일 내 Edge Server에 저장하였으며, 생성 중인 Output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생성이 완료되기 전에도 이용자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Rn. 25).

9) Schlager는 독일어권에서 널리 유행하는 대중가요 장르이다.

공중이용제공에 해당하고, 적어도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공중전달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생성된 Output에서도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가 재인식되므로 복제 및 공중전달 침해가 성립하고, 이러한 행위는 모델의 학습과 운영을 지배하는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습 목적 복제에 대해서는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1항(17 U.S.C. § 106(1))의 복제권침해가 성립하고 동법 제107조(17 U.S.C. § 107)의 fair use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학습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이 Output으로 다시 나타나 기존 음악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문제된 음악저작물이 모델 내부에 복제되거나 저장되어 있다는 전제를 부정하였다. 모델의 가중치(weight)와 파라미터(parameter)는 학습데이터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데이터로부터 학습한 통계적 패턴과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낼 뿐이며, 원래의 오디오파일도 모델 안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델의 저장용량에 비추어 방대한 학습데이터 자체가 모델 내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는 Output에서 나타난 유사성만으로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을 추론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원래 가사, 제목 및 장르 등의 정보를 Prompt에 입력함으로써 생성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좁혔고, 이러한 입력과 모델이 학습한 통계적 관계가 결합하여 유사한 Output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된 Output을 모델 내부에 저작물의 복제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설령 모델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가 존재하더라도, 피고는 그것이 저작권법 제44b조 및 DSM 지침 제4조의 TDM 제한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모델의 파라미터는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 자동화된 데이터분석의 결과이며, TDM을 위한 복제를 학습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모델 및 Output과 관련해서도 피고는 자신이 이용자에게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특정 저작물을 이용자가 선택한 시간에 안정적으로 호출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이용제공이 성립하지 않고, Output은 이용자의 Prompt를 계기로 생성되는 이용자 측 정보이므로 그 복제나 공중전달을 피고 자신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Output 생성과정의 일시적 복제에는 저작권법 제44a조가 적용되고, 자신에게는 디지털 서비스 법(DSA) 제6조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면책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법과 관련하여 피고는 생성형 AI 모델학습이 새로운 음악생성기술의 개발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라는 이유로 fair use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특히 AI 모델학습의 fair use가 인정된 Bartz v. Anthropic

및 Kadrey v. Meta 판결을 원용하였다.

피고는 아울러 기억현상의 존부, 모델의 작동방식, 재인식가능성 및 미국 저작권법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감정을 신청하고, 원고에게 권리관리계약(Berechtigungsverträge)¹⁰⁾ 등의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였으며, 나아가 절차를 중지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습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이 모델에 기억되어 Output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이 독일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의 복제에 해당하는가이다. 이는 모델이 학습데이터로부터 패턴·상관관계 등의 정보만을 학습한 경우와 특정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이 모델 내부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수용된 경우를 저작권법상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둘째,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이 복제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저작권법 제44b조 및 DSM 지침 제4조의 TDM 제한사유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이다. 여기에는 AI 모델학습을 위한 복제가 어느 범위까지 TDM에 포함되는지,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도 TDM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Rolling Cipher를 우회하여 취득한 학습자료에 대하여 적절한 접근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포함된다.

셋째, 모델 내부에 기억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모델 및 음악생성기의 제공 자체가 공중전달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이용제공과 제15조 제2항 제1문의 보다 넓은 공중전달을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성된 Output에서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가 재인식되어 복제 및 공중전달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용행위를 모델 제공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Output 생성과정에서의 복제행위에 대한 행위지배(Tatherrschaft), 저작권법 제44a조의 일시적 복제 제한사유 및 DSA 제6조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면책도 함께 쟁점이 된다.

다섯째,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습목적의 복제가 미국 저작권법상 fair use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가이다. 특히 생성형 AI 모델학습의 변형적 성격, 학습저작물 전체의 복제, 학습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Output의 생성, 저작물의 취득경위 및 기존 음악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네 가지 요소에 따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10)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여기서는 GEMA)와 개별 권리자(작곡가·작사가·음악출판사) 사이에 체결되는 기본계약으로, 권리자가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권을 관리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관리단체가 이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 저작권법 제105조 이하의 저작권신탁관리계약(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관리단체의 청구권자 적격(Aktivlegitimation)이 바로 이 계약에서 도출되므로, 피고가 그 제출을 구한 것이다.

이 밖에 절차적으로는 피고의 각 증거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재판을 제청할 것인지도 다투어졌다.

4) 지방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1) 본안 판단의 전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국제재판관할, 청구의 특성성 및 원고의 소송수행권 등 절차적 요건을 인정한 뒤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다.¹¹⁾

독일에서 이루어진 모델 내부의 복제, 모델의 제공 및 Output과 관련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Rome II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독일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Rn. 178).

또한 문제된 여섯 음악작품이 독일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음악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먼저 EU법상 저작물성과 독창성의 기준을 제시한 뒤, 각 음악작품의 멜로디, 리듬, 화성, 형식, 편곡 및 악기구성 등의 창작적 요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Rn. 180-209). 이어 추가약정에 따른 배타적 이용권의 이전과 공동저작자의 권리행사 등을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권자 적격(Aktivlegitimation)을 인정하였다(Rn. 210-238). 이 과정에서 “Daddy Cool”의 음악을 특정 작곡가가 단독으로 창작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가 실시되었다(Rn. 215-216).

법원은 전체적으로 원고의 금지·정보제공 및 손해배상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모델의 제공 및 Output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이용제공은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공중전달 침해를 인정하였다.

(2)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과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

법원은 문제된 음악저작물이 피고의 모델 내부에서 복제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 서두에서 피고가 모델을 독일 내의 Edge Server에 저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Rn. 239). 모델 내부의 복제가 독일 저작권법상의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영토적 연결점은 바로 이 점에 있다.

가. 학습과정의 단계적 구별

법원은 먼저 모델학습과 관련한 저작물의 이용을 하나의 단일한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서로 다른 단계로 구별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학습자료를 추출하여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고 학습데이터를 작성하는

11) 법원은 국제재판관할 및 토지관할, 청구의 특성성, 사후적 청구병합 및 소의 변경, 원고의 소송수행권 등을 검토하였다(Rn. 112-175). 법원은 독일 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관리단체법(VGG) 제131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ZPO) 제32조에 따라 국제·토지관할을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습목적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관리단체법 제131조 제2항의 집중관할 규정을 국제재판관할에도 이중기능적으로 적용하여 관할을 인정하였고(Rn. 113-134), “음악저작물의 일부”, “변형”, “parameter 또는 기타 데이터구조의 형태로 저장” 등의 표현이 포함된 청구도 구체적인 침해행위와 제출된 Output을 통하여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보았다(Rn. 135-150). 또한 “Big in Japan”과 “Forever Young”에 대해서는 일부 공동저작자가 원고에게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맡길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수행권(Prozessführungsbefugnis)을 인정하였다(Rn. 153-175).

단계(1단계), ② 데이터를 분석·가공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2단계), ③ 학습된 모델을 Prompt와 Output을 통하여 이용하는 단계(3단계)로 나누었다(Rn. 240).¹²⁾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은 두 번째 단계인 모델학습 단계와 관련된다. 법원은 학습자료의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와 구별하여, 학습의 결과 문제된 음악저작물이 모델 내부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Rn. 239-241).

나. 기억현상의 의미와 입증

법원은 정보기술 분야의 연구를 토대로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기억현상(Memorization)은 모델이 학습데이터에서 패턴이나 상관관계와 같은 정보만을 추출하는 것을 넘어, 학습데이터의 내용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학습된 파라미터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학습데이터가 양적으로 전부 또는 정확히 동일한 형태로 모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n. 243-245).

법원은 나아가 기억현상이 언어모델뿐 아니라 음악생성모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서, 가사와 유사한 형태의 Prompt가 입력될 경우 피고의 모델이 특히 원곡에 근접한 Output을 생성하는 데 “특히 취약하다”는 정보기술 분야의 연구결과를 원용하였다(Rn. 244).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은 모델의 종류와 조사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될 수 있다. 법원은 학습데이터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고 결과개방적인 프롬프트”(einfache, ergebnisoffene Prompts)¹³⁾를 이용하여 생성된 Output과 해당 학습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Rn. 245-247).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방법에 따라 문제된 여섯 음악저작물이 피고의 모델에 기억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해당 음악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원고가 원래 가사, 일반적인 음악스타일 및 제목을 입력하여 생성한 Output에서는 문제된 음악저작물의 음악적 요소가 재인식될 수 있었다(Rn. 248-249).

특히 법원은 원고가 사용한 Prompt가 단순하고 결과개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동일한 Prompt를 여러 차례 입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Output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가사를 입력한

12) 이 사건 판결은 3단계 구별의 근거로 같은 재판부의 2025년 ChatGPT 판결이 아니라 문헌(Wandtke, NJW 2019, 1841, Sasing-Wagenpfeil, ZGE 2024, 212, Spindler, GRUR 2016, 1112) 및 함부르크 지방법원 판결(LG Hamburg, Urteil vom 27.09.2024, 310 O 227/23 Rn. 46 - LAION)을 원용하고 있다(Rn. 240). 그런데 2025년 판결 Rn. 166도 동일한 문헌과 판례를 들어 사실상 같은 문장으로 3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두 판결 사이에 문헌상의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TDM 제한사유가 AI 모델학습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2025년 판결(Rn. 173)과 달리 2026년 판결은 함부르크 고등법원 판결(OLG Hamburg, Urteil vom 10.12.2025, 5 U 104/24 Rn. 71 ff. - LAION)을 추가로 인용한다(Rn. 285).

13) “단순하고 결과개방적인 프롬프트”(einfache, ergebnisoffene Prompts)란 생성될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거나 특정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지 않는 Prompt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곡의 가사·제목과 일반적인 장르를 입력하였으나 선율·화성·리듬·템포 등의 구체적인 음악적 요소를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평가적·암시적 지시 등을 통해 Output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Prompt와 구별된다(Rn. 250-256).

것도 구체적인 음악적 결과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사는 음절수나 강세 등을 통하여 음악적 표현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음높이, 선율진행, 화성, 리듬 또는 템포를 결정하지 않으며, “Schlager”, “Disco”, “Pop” 등의 장르 지정도 다양한 음악적 결과를 허용하는 일반적인 조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Rn. 250-257).

법원은 문제된 Output이 우연히 생성된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하였다. 음악저작물의 복잡성과 길이, 학습데이터와 Output 사이의 광범위한 일치 및 사용된 Prompt의 단순하고 결과개방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우연한 일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n. 258).

또한 법원은 원고가 작품당 하나의 Output만을 제출한 것은 판단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 기억현상은 동일한 Prompt에서 동일한 Output이 생성되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의 모델에는 트랜스포머 모델과 확산모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신경망의 핵심적 연산 자체는 결정론적이지만 계산된 토큰확률로부터 실제 토큰을 선택하는 후속단계에서 무작위성이 개입할 수 있으므로 최종 Output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n. 259). 모델의 저장용량이 전체 학습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판단할 것은 전체 학습자료가 모델에 저장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문제된 여섯 음악저작물이 재인식 가능한 형태로 기억되어 있는지였고, 왜 하필 이 여섯 작품이 기억되었는지를 원고가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Rn. 260).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모델 내부의 저장 또는 기억 여부에 관한 피고의 감정신청을 기각하였다(Rn. 261).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중치와 파라미터의 구분이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법률문제로서 감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재판부는 피고의 모델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작동한다거나 Output이 학습데이터의 정확한 복사본이라는 전제에 서 있지 않으므로, 그 점에 관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셋째, 기억현상을 Output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연구들과 충분히 대결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는 문제된 Output이 생성된 다른 개연성 있는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기억현상의 복제 해당 여부

법원은 이와 같이 인정된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이 독일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n. 262). 동법 제16조는 정보사회지침 제2조를 국내법으로 이행한 규정이므로 복제의 개념은 EU법에 따라 자율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지침 제2조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복제를 그 방법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폭넓게 포섭하므로, 복제는 원본과 정확히 동일한 형태의 복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아날로그 저작물의 디지털화, MP3와 같은 압축형식 또는 축소된 형태의 저장도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Rn. 263-265).

독일 판례에서 복제란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인간의 감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적 고정(körperliche Festlegung)을 의미한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서 문제된 음악저작물의 표현이 기억현상을 통하여 모델의 파라미터에 포함된 데이터에 구현되어 있고, 그 파라미터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모델에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Rn. 266-268).

파라미터가 확률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정도 이러한 판단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복제권은 기술중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저작물이 어떠한 기술적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다. 법원은 손실압축 방식의 MP3 파일도 복제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과 같이 모델에 포함된 통계적 정보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이 재인식 가능한 형태로 재현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고정 역시 복제개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n. 269).

저작물에 관한 정보가 하나의 특정 파라미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파라미터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복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를 정보가 파일 전체에 분산되어 저장되는 점진적 JPEG(progressive JPEG)¹⁴⁾와 비교하였다. 개별 파라미터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결정적인 것은 파라미터에 포함된 데이터 전체를 통하여 보호되는 표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보았다(Rn. 270).

피고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원용하여, 복제가 인정되려면 맥락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현형식이 특정 정보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모델의 가중치와 파라미터에는 그러한 구체적 식별가능성(Abgrenzbarkeit)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식별가능성은 보호대상인 ‘저작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권리발생요건이지 복제권의 구성요건을 좁히는 요소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가 Levola Hengelo 판결¹⁵⁾에서 식료품의 맛에 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식별가능성을 요구한 것은 저작물성 판단의 맥락이었고, 오히려 이 판결은 음악저작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표현형식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Rn. 271-274).

또한 저작물의 표현은 인간의 감각으로 간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었다. 원고가 제시한 Output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컴퓨터와 피고의 음악생성기를 이용하여 단순한 Prompt를 입력하면 문제된 음악저작물의 표현을 다시 지각할 수 있으므로, 파라미터를 직접 해독하는 별도의 파라미터재생기(Parameterspieler)와 같은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Rn. 275-277). 다만 법원은 평균적 이용자의 접근가능성이 결정적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완전접근과 같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지각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복제는 성립하며, 지각의 어려움은 복제의 성립이 아니라 저작물이 공중에 이용제공되지 않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Rn. 278).

14) Progressive JPEG는 이미지정보를 파일의 여러 부분에 분산하여 저장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읽어 전체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JPEG 저장방식이다. 법원은 이를 비유로 들어, 저작물에 관한 정보가 하나의 특정 파라미터가 아니라 다수의 파라미터에 분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델 내부의 물리적 고정 및 복제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Rn. 270).

15) EuGH Urteil vom 13.11.2018, C-310/17 – Levola Hengelo.

마지막으로 법원은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가 성립하기 위하여 동일한 Prompt에서 항상 동일한 Output이 반복적으로 생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모델 내부에 저작물의 표현이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를 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동일한 Output의 반복적 생성은 복제의 독립적인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n. 279).

(3) 모델 내부 복제에 대한 TDM 제한사유의 적용 부정

가. AI 모델학습과 TDM 제한사유의 기본적 적용범위

법원은 우선 저작권법 제44b조와 DSM 지침 제4조의 TDM 제한사유가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제44b조에 규정된 TDM은 디지털 또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패턴·경향·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얻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제행위도 제한사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Rn. 280-284).

특히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DSM 지침의 목적과 기술중립적인 규율방식에 비추어 AI 모델학습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TDM의 적용영역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학습 코퍼스¹⁶⁾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1단계의 복제행위는 TDM 제한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n. 285-289).

나. 단순한 정보분석과 기억현상의 구별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확인된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은 이러한 TDM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였다. TDM은 저작물로부터 패턴이나 통계적 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음악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이 모델의 파라미터에 수용되어 이후 다시 재현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은 단순한 정보분석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Rn. 290-292).

저작권법 제44b조 제2항과 DSM 지침 제4조 제1항은 TDM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2단계에서 발생한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은 더 이상의 데이터분석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복제가 아니므로 이러한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모델 내부에 남은 저작물의 복제를 TDM 제한사유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n. 293-295).

또한 기술과 혁신에 우호적인 해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사유의 문언을 넘어 모델 내부의 복제까지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TDM 제한사유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TDM을 위해 필요한 사전 복제와 보호되는 표현이 모델에 남아 이후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기억현상은 권리자의 이용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Rn. 296-299).

16) Learning Corpus.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특정 언어, 지식, 또는 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집·정제된 대규모 텍스트 및 데이터 집합.

다. AI Act는 새로운 저작권 제한사유를 창설하지 않음

피고는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제53조 제1항 c호와 d호가 일반목적 AI 모델 제공자에게 EU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의 요약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원용하였다.

법원은 먼저 위 규정이 AI Act 제113조 제3항 b호에 따라 2025년 8월 2일에야 발효하였으므로 이 사건 침해행위 이후의 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실제적으로도 이러한 규정들이 DSM 지침 제4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저작권 제한사유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AI Act 제53조 제1항 c호는 기존 EU 저작권법과 DSM 지침상의 권리유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d호의 학습콘텐츠 요약의무 역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별도의 이용 허용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Rn. 300-303). 같은 취지에서, 일반목적 AI 모델 제공자를 위한 실무지침(Praxisleitfaden) 역시 그 준수가 EU 저작권법의 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Rn. 303).

법원은 기술적으로 기억 현상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TDM 제한사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허락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가 AI 모델의 개발이나 운영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n. 304-307).

라. Rolling Cipher의 우회와 적법한 접근의 부재

법원은 이와 별도로 TDM 제한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또 하나의 근거로 적법한 접근의 부재를 들었다. 피고는 YouTube에서 문제된 음원을 학습자료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영구적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Rolling Cipher를 우회하였다. 법원은 Rolling Cipher가 다운로드를 제한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기술적 조치가 100% 완전하다면 우회 자체가 불가능하여 법적 우회 금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가 실제로 이를 우회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사정은 그 효과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우회하여 취득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44b조 제2항 및 DSM 지침 제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접근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n. 308-310).

결국 모델 내부 기억 현상에 대한 TDM 제한사유의 적용 부정은 서로 독립적인 두 논거에 기초한다. 하나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모델 내부의 복제가 TDM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가 아니어서 저작권법 제44b조 및 DSM 지침 제4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가 문제된 음악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 반복위험과 “독일 내 서버 미보유” 주장의 배척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반복위험은 사실상 추정되고, 이는 위반 시 제재가 수반되는 중지확약서(strafbe-

wehrte Unterlassungserklärung)의 제출에 의해서만 배제될 수 있는데, 피고는 그러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Rn. 311).

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6년 4월 7일자 준비서면에서 더 이상 독일 내 서버에 모델가중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진술은 앞서 언급한 중지확약서와 동일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새로운 사실주장으로 민사소송법 제296a조에 따라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다(Rn. 312). 이 판단은 앞서 본 것처럼 독일 내 침해의 영토적 연결점이 독일 소재 Edge Server에 있다는 점과 직접 연결되므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3자에 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별도로 반복위험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중개자로서의 책임은 직접 행위자 책임보다 약한 형태의 책임으로서 행위자 책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minus)¹⁷⁾(Rn. 313).

(4) 모델 및 음악생성기의 제공과 공중전달

가.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이용제공” 부정

원고는 기억된 음악저작물을 포함하는 모델과 음악생성기의 제공 및 Output이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이용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제15조 제2항 제1문의 공중전달을 주장하였다(소송내 조건부 청구). 법원은 제19a조에 관한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게 되었다(Rn. 315).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이용제공이 성립하려면 공중의 구성원이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보호대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부정한 이유는 개념적 논거만이 아니라 증명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즉 이 요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주장 및 증명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음악생성기를 이용할 때 어떤 Prompt로도 문제된 음악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증명하지 못하였다. 일부 작품의 경우 문제된 Output이 생성되기까지 동일한 Prompt가 최대 176회 입력되어야 했다면, 그 호출은 이용자가 선택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문제된 각 작품에 대하여 다른 침해적 Output도 얻었으나 침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의 구체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 Output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대상이 아닌 다른 음악저작물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하였다(Rn. 316).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저작물이 모델 내부에 기억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19a조의 공중이용제공이

17) 독일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08조(우리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에 대응)와 관련하여, 법원이 원고가 신청한 것보다 적은 것(minus)은 인용할 수 있지만, 다른 것(aliquid)이나 더 많은 것(plus)은 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여기서의 minus는 청구취지의 구성요소 사이의 포함관계를 가리킨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복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복제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형태였다(주문 1a, 1b, 1c). 피고는 “제3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원고가 반복위험을 주장·증명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3자를 통한 행위에 대한 중개자로서의 책임은 직접 행위자책임보다 약한 형태의 책임으로서 행위자책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강한 것(행위자책임)이 인정되면 약한 것(중개자책임)은 자동으로 포섭되므로, 그 부분만 따로 반복위험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제19a조의 부정은 상당 부분 이 사건에서의 증명상황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나.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공중전달”은 인정

그러나 법원은 모델 및 음악생성기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제1문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공중전달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n. 369-388).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은 공중전달권의 개별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에 해당하지만 제15조 제2항 제2문에서 별도의 권리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제15조 제2항 제1문을 지침 합치적으로 해석하여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공중전달권”(unbenanntes Recht der öffentlichen Wiedergabe)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Rn. 370). 직접적인 공중전달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달행위와 공중이라는 두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Rn. 371).

공중전달의 개념은 폭넓고 기술중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기술적 형태의 이용도 공중전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피고는 모델과 음악생성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모델 내부에 기억된 음악저작물을 Output으로 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보았다(Rn. 372-375). 또한 법원은 문제된 모델이 독일의 Edge Server에도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모델의 제공이 독일 내에서 이루어진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n. 375).

법원은 WCT 제8조 등을 근거로 실제로 저작물이 호출되었는지는 전달행위의 성립에 결정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전달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자가 문제된 저작물을 이미 호출하였다는 사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n. 376-377). 즉 저작권법 제19a조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동법 제15조 제2항의 공중전달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전달행위는 피고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로 평가되었다. 피고는 단순히 제3자의 전달행위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모델의 학습과 구성에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의 단순하고 결과개방적인 프롬프트는 보호되는 음악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Output에서 나타난 해당 내용은 이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피고가 제공한 모델의 학습과 작동에 기인한다고 보았다(Rn. 378-379).

법원은 제3자의 전달행위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중심적 역할(zentrale Rolle), 행위의 의도성(고의성) 등의 추가 기준은 피고 자신의 직접적인 전달 행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의 중심적 역할, 기억 현상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의 영리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Rn. 380-383).

마지막으로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무료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적으로 충분한 공중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모델의 이용자들은 권리자가 원저작물의 최초 공중전달을 허락할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n. 384-388).

(5) Output에 의한 복제와 공중전달

가.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의 재인식가능성

법원은 모델 자체의 기억 현상과는 별도로, 생성된 Output에 의해서도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판단의 핵심은 원저작물과 Output의 전체적인 인상이 일치하는지가 아니라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가 Output에서 재인식될 수 있는지(Wiedererkennbarkeit) 여부였다(Rn. 317-324).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개작 또는 기타 변형이 물리적으로 고정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제16조의 복제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원저작물이 동일한 형태로 재현될 필요는 없다. 결정적인 것은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가 변형된 대상에서도 재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았다(Rn. 319-321).

법원은 재인식가능성을 평균적인 음악청취자의 청취이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면서, 재판부 구성원 자신이 평균적 청취자에 속하므로 재인식가능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감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청취인상 외에 제출된 악보자료도 함께 근거로 삼았다(Rn. 323). 그 결과 “Atemlos durch die Nacht”, “Rasputin”, “Forever Young”, “Big in Japan” 및 “Mambo No. 5 A little bit of”의 후렴에 대해서는 선율과 작곡이 매우 광범위하게 차용되어 재인식가능성에 의문이 없고, “Daddy Cool”의 Output에서도 원저작물의 독창적 요소가 재인식된다고 판단하였다(Rn. 323-369).

나. Output에 의한 공중전달과 피고에의 귀속

Output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이용제공은 인정되지 않았지만(Rn. 315-316), 법원은 제15조 제2항 제1문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공중전달권 침해를 인정하였다(Rn. 389-395).

법원은 Output에 나타난 보호되는 음악적 내용이 모델의 학습과 구조라는 시스템적 원인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문제된 음악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였고 그 결과 모델에 기억현상이 발생한 반면, 이용자가 입력한 Prompt는 단순하고 결과개방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인 음악적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Output에 나타난 보호되는 음악적 내용은 이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모델의 학습과 구조 등 피고가 설정한 시스템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Rn. 389-391).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동일한 Prompt에서 항상 동일한 Output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정도 공중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4년 한 달 동안 221만 명이 방문한 서비스의 규모를 고려하면, 4회 또는 176회의 입력 중 한 번씩만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음악이 생성되더라도 잠재적 수신자의 수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n. 392-395).

다. Output 생성에 따른 복제행위의 피고 귀속

법원은 Output이 이용자의 RAM과 생성 과정에서 독일의 Edge Server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의 복제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다(Rn. 396-397).

복제행위의 귀속은 연방대법원(BGH) 판례에 따라 형법상 정범 및 공범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되며, 유형적 고정물 기술적으로 실행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복제행위의 행위자가 된다고 설명하였다(Rn. 398-399).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Output 생성에 따른 복제에 대하여 행위지배(Tatherrschaft)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Rn. 400).

피고는 학습데이터를 선정하고 모델의 학습과 구조를 결정하였으며, 그 학습 결과 문제된 저작물의 기억 현상이 발생하였다. 반면 단순하고 결과개방적인 Prompt를 입력한 이용자는 생성될 구체적인 음악적 내용을 지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용자가 Prompt의 입력으로 생성과정을 작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를 복제행위의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n. 400).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미리 정해진 콘텐츠를 녹음하는 인터넷 라디오 녹음기¹⁸⁾나 수동적인 온라인 마켓¹⁹⁾과 구별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이용자의 단순한 지시를 기술적으로 실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복제되는 구체적인 음악적 내용이 모델의 작동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보았다(Rn. 401-402).

라. 저작권법 제44a조의 일시적 복제 제한사유 부정

Output 생성 중 RAM과 Edge Server에 발생하는 복제가 일시적인 복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44a조의 제한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n. 403-406). 동법 제44a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복제가 독립적인 경제적 의미를 갖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Edge Server의 저장은 지연시간을 줄여 이용자가 음악의 생성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부터 이를 청취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여 고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법원은 이러한 기능 자체에 독립적인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Rn. 404-405).

또한 동법 제44a조 제1호 또는 제2호가 요구하는 목적도 충족되지 않았다. 문제된 저작물은 Rolling Cipher의 우회를 통해 취득되었고, 생성된 Output 자체도 공중전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적법한 저작물 이용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n. 406).

이러한 복제 및 공중전달 침해만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Output이 제14조의 저작물

18) BGH, Urteil vom 27.06.2024, I ZR 14/21 Rn. 29 – Internet-Radiorecorder II.

19) BGH, Urteil vom 23.10.2024, I ZR 112/23 Rn. 72 – Manhattan Bridge.

왜곡(Entstellung)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Rn. 407).

마. DSA 제6조의 면책 부정

법원은 또한 디지털 서비스 법(DSA) 제6조의 면책규정이 금지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제6조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저장하는 중개서비스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서비스 제공자 자신의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구별기준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것처럼 사업자의 역할이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기술적·자동적·수동적인지, 아니면 저장된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는지이다(Rn. 408-409).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단순한 기술적·내용중립적 인프라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모델과 음악생성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공하고 문제된 Output을 생성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Prompt는 단순하고 결과개방적인 것이어서 Output에 나타난 보호되는 음악적 내용을 미리 지정하거나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문제된 Output을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로 볼 수 없고, 피고 자신의 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온라인 마켓에 관한 특별규정인 DSA 제6조 제3항으로부터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자기의 것으로 삼은'(zu eigen gemacht) 콘텐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것(Zu-Eigen-Machen)을 기준으로 정의한 바가 없다고 명시하였다(Rn. 410).

(6) 독일 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법원은 이상의 판단에 따라 독일에서 이루어진 모델 내부의 복제와 모델 및 음악생성기의 제공에 의한 공중전달, 그리고 Output에 의한 복제 및 공중전달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였다(Rn. 177, 179, 314).

또한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 및 민법(BGB) 제242조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제공청구를 인정하였다. 피고의 침해가 상업적 규모(gewerbliches Ausmaß)로 이루어졌고, 침해의 범위와 매출 등에 관한 정보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Rn. 411).

법원은 손해배상의무도 인정하였다. 피고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필요한 이용권한을 신중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었고, 기억현상과 그에 따른 저작권침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n. 412).

이 밖에도 법원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판결주문의 공고를 허용하였고(Rn. 413-414), 사전 경고(Abmahnung)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청구도 인정하였다(Rn. 415-418).²⁰⁾

20) 판결문 Rn. 412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 제97조 제1항”(§ 97 Abs. 1 UrhG)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제9조 제1항은 침해 제거 및 금지청구를, 제2항은 손해배상을 규정한다. 판결도 이어서 과책(Verschulden)을 심사하여 적어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제97조 제2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 미국법에서의 학습목적 복제와 공정이용(fair use)

가. 미국법의 적용과 학습목적 복제

피고의 모델학습과 이에 필요한 학습목적 복제는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법원은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이러한 행위의 저작권침해 여부에는 미국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에게 해당 권리가 이전되었는지는 계약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독일법에 따라 판단하였다(Rn. 419-423).

사실관계의 증명에는 법정지법인 독일의 증거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독일법상 판단에서 민사소송법 제286조에 따라 이미 인정한 학습데이터의 사용, Output의 생성 및 기억현상에 관한 사실인정을 미국 저작권법 적용의 기초로 삼았다(Rn. 424).

외국법인 미국 저작권법의 내용은 독일민사소송법 제293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관련 미국 판례 및 독일 원헌 소재 막스플랑크 혁신 및 경쟁 연구소 도서관의 자료를 통하여 미국법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아 미국법 확정을 위한 감정신청을 기각하였다(Rn. 425-426). 이어 법원은 문제된 음악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사전처리(preprocessing)²¹⁾, 백업(backup) 및 모델학습을 위하여 복제한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제106조 제1항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n. 437-446). 아울러 이러한 이용이 “평균적 수용자가 차용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고 단편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de minimis 항변²²⁾도 배척하였다(Rn. 446). 따라서 핵심 쟁점은 이러한 복제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fair use)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였다.

다만 기억된 음악저작물이 모델 가중치에 부호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미국 저작권법상 별도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었다(Rn. 445).

21) 사전처리(preprocessing)는 원시 데이터를 AI 모델의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 및 가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음원파일의 변환 및 포맷변경, 특징추출(Feature Extraction), 스펙트로그램 작성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Rn. 14).

22) de minimis 항변은 “법은 사소한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de minimis non curat lex)는 법언에서 유래한 것으로, 차용의 정도가 지나치게 미미하여 애초에 소구 가능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Fisher v. Dees, 794 F.2d 432, 434 (9th Cir. 1986)를 인용하여,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이용이 평균적 수용자가 그 차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하고 단편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다(Rn. 446). 이는 fair use와는 체계상 구별된다. fair use는 침해의 성립을 전제로 이를 정당화하는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으로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반면, de minimis는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의 문턱에 미달한다는 취지로서 청구원인 자체에 대한 부인에 가깝다. 이 판결이 de minimis를 복제의 성립 단계에서 다루고, fair use를 그 다음 항목에서 별도로 검토한 것(Rn. 447 이하)도 이러한 체계에 부합한다. 피고의 주장 취지는 학습을 위한 복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내부적·기술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Output에서의 재인식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는 뒤에서 intermediate copy 법리를 배척한 논거(Rn. 515)와 같은 기초 위에 서 있다. 한편 음반의 샘플링과 관련해서는 de minimis 항변의 허용 여부를 두고 미국 내에 연방항소법원 판례가 대립한다. 제6연방항소법원은 Bridgeport Music, Inc. v. Dimension Films, 410 F.3d 792 (6th Cir. 2005)에서 17 U.S.C. § 114(b)의 해석을 근거로, 음반(sound recording)에 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차용이라도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아 de minimis 항변을 배제하였다. 다만 이 배제는 음반에 한정되며 악곡(musical composition)에는 미치지 않고, fair use 항변의 여지도 남겨 두었다. 반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VMG Salsoul, LLC v. Ciccone, 824 F.3d 871, 886 (9th Cir. 2016)에서 의회의 의사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Bridgeport를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음반에 대해서도 de minimis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립은 현재까지 연방대법원이나 입법에 의하여 해소되지 않았다. 원헌제1지방법원 판결이 인용한 Fisher v. Dees 판결과 그 “평균적 수용자의 인식가능성” 기준은 제9연방항소법원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일 제6연방항소법원의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음반에 관해서는 de minimis 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EU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가 Pelham 판결(EuGH, Urteil vom 29.07.2019, C-476/17 – Pelham)에서 재인식 가능한 샘플의 이용을 복제로 보아 사실상 같은 결론에 이르렀고, 한국 저작권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 안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 같다.

나. fair use의 판단기준과 Bartz 및 Kadrey 판결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① 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④ 잠재적 시장 또는 저작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Rn. 448-462). 이어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을 다룬 미국의 Bartz v. Anthropic 판결과 Kadrey v. Meta 판결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Rn. 463-478).

Bartz 사건²³⁾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책을 언어모델의 학습에 이용한 행위가 매우 변형적인 이용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학습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이 침해적인 Output으로 재현되지 않았고, 법원은 그러한 Output이 존재하였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적법하게 구입한 책을 내부 도서관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화한 행위도 fair use로 인정된 반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도서파일을 별도의 중앙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하여 보관한 행위는 fair use로 인정되지 않았다(Rn. 464-468).²⁴⁾

Kadrey 사건²⁵⁾에서도 언어모델의 학습은 높은 변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적대적 프롬프팅(adversarial prompting)²⁶⁾을 사용하더라도 확인된 재현은 최대 약 50개의 단어와 문장부호에 그쳤으며, 원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이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Output으로 재현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구체적인 시장손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Rn. 469-478).

원헌 제1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두 판결과 상당히 다르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곡의 가사 등은 입력되었지만 구체적인 선율·화성·리듬 등의 음악적 지시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개방적인 Prompt에서도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Output이 실제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학습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에서는 세 사건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Bartz 사건에서는 불법복제물의 복제, Kadrey 사건에서는 이른바 그림자도서관²⁷⁾의 이용, 이 사건에서는 Rolling Cipher의 우회가 각각 문제되었기 때문이다(Rn. 479-481).

다. 첫 번째 요소: 이용의 목적과 성격

법원은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이 일반적으로 변형적 이용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

23) Bartz et al. v. Anthropic PBC, No. 3:24-cv-05417 (N.D. Cal. 2025).

24) Bartz 사건에서는 불법복제물 사본과 관련한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집단소송절차에서 화해하였고, 그 화해는 2026년 7월 20일 승인되었다(Case 4:24-CV-05417-AMO, Document 680; LG München I, Rn. 468).

25) Richard Kadrey v. Meta Platforms, Inc., No. 23-CV-03417-VC, 2025 WL 1752484 (N.D. Cal. 2025).

26) 적대적 프롬프팅(adversarial prompting)은 통상적인 이용방식과 달리 모델에 특수하게 설계된 Prompt를 입력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내용이나 모델이 일반적으로 출력하지 않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Kadrey 사건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저작물의 재현을 시도하였으나, Output에서 확인된 것은 최대 약 50개의 단어와 문장부호에 그쳤다. 이는 구체적인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는 이 사건의 '단순하고 결과개방적인 Prompt'와 구별된다.

27) 그림자도서관(Schattenbibliothek, shadow library)은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서적·학술논문 등 대량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비공식 온라인 저장소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Library Genesis(LibGen), Sci-Hub, Z-Library, Anna's Archive 등이 있다. Kadrey 사건에서는 Meta가 LibGen 및 여러 shadow library를 집합한 Anna's Archive에서 서적을 취득하여 Llama 모델의 훈련에 이용한 사실이 문제되었다.

않았다. AI 모델의 학습은 원저작물의 본래 이용과 다른 목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Rn. 483-484).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Warhol 판결²⁸⁾에 따라 fair use에서는 AI 학습이라는 행위유형을 추상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된 구체적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모델이 새로운 음악만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Output도 실제로 생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이용은 모델학습의 일반적인 변형성을 근거로 fair use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n. 482-499). 이때 법원은 피고가 주관적으로 의도한 목적이 아니라 이용의 객관적 목적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Rn. 495).

법원은 나아가 방론으로, 이 사건의 Output이 미국법상으로도 침해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제2연방항소법원의 일반 청중 기준(audience test)과 제9연방항소법원의 외재적(extrinsic)·내재적 심사(intrinsic test)에 따른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의 심사기준²⁹⁾이 결과적으로 EU법상 재인식가능성의 요건과 일치하며, 미국의 두 심사방식 모두 음악저작물의 경우 평균적 음악청취자의 청취이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Rn. 487-489).

피고의 이용이 상업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서비스는 무료 이용방식을 일부 제공하였지만 유료 구독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상업적 사업모델이었다(Rn. 498-500).

나아가 피고가 Rolling Cipher를 우회하여 학습저작물을 취득한 점도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법원은 저작물을 단순히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와 저작물 자체를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였다. 위법한 취득이 fair use를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행위의 성격을 평가할 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 사건의 Rolling Cipher 우회는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a)(1)(A)에 따른 접근통제조치의 우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n. 504-510). 다만 법원은 이용의 정당화 부재와 상업성만으로도 첫 번째 요소가 이미 피고에게 불리하며, 취득경위는 여기에 “추가로” 고려되는 사정이라는 점을 밝혔다(Rn. 504).

28)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 S. 508, 526 f. (2023).

29)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침해 판단에서 요구되는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문헌에서는 improper appropriation의 문제로도 논의됨)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헌제1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제2연방항소법원과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발전한 심사방식을 검토하였다(Rn. 488). 제2연방항소법원은 Arnstein v. Porter, 154 F.2d 464, 468 f. (2d Cir. 1946) 이래 복제와 위법한 차용을 구별하는 2단계 심사를 발전시켜 왔다. 원헌지방법원은 이를 보호되는 표현의 수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protected expression test), 실질적 유사성의 존부를 ‘보통의 일반 청취자의 반응’(the response of the ordinary lay hearer)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후자의 판단에서는 전문가의 분석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audience test). 다른 관할의 법원들도 이러한 접근을 받아들여 왔다. 제9연방항소법원도 음악저작물을 포함하여 2단계 심사를 적용한다. 제1단계(extrinsic test)는 보호 가능한 표현요소를 분석적으로 분해하고 그 객관적 유사성을 비교하는 심사로써 전문가 증거가 활용되며, 제2단계(intrinsic test)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표현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그 유사성이 실질적인지를 결정한다(Skidmore v. Led Zeppelin, No. 16-56057 (9th Cir. 2020), p. 23; Williams v. Gaye, 895 F.3d 1106, 1119 (9th Cir. 2018) 참조). 원헌제1지방법원은 명칭과 세부구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미국법상의 2단계 심사가 결과적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의 수용 여부와 평균적 수용자에게 인식되는 유사성을 차례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EU법상 재인식가능성(Wiedererkennbarkeit)의 판단구조와 대응한다고 보았다(Rn. 489; EuGH, Urteil vom 04.12.2025, C-580/23, C-795/23 Rn. 86 – Mio u.a.; 음악저작물에서 평균적 음악청취자의 청취이해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 관하여 EuGH, Urteil vom 29.07.2019, C-476/17 Rn. 31 ff. – Pelham; BGH, Urteil vom 30.04.2020, I ZR 115/16 Rn. 29 – Metall auf Metall IV) 참조.

라. 두 번째 요소: 저작물의 성격

두 번째 요소 역시 fair use에 불리하게 평가하였다. 문제된 저작물은 사실적·정보적 저작물이 아니라 창작적 성격이 강한 음악저작물이었고, 피고가 학습과정에서 이용한 것도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에 한정되지 않고 음악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포함하였다(Rn. 511-513).

저작물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비공개저작물의 이용은 fair use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저작물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창작성이 강한 저작물의 이용이 fair use에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Rn. 513).

마. 세 번째 요소: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세 번째 요소도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하였다. 피고는 모델학습을 위하여 문제된 음악저작물의 완전한 음원을 복제하였다(Rn. 514).

법원은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fair use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 복제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복제도 fair use와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복제가 내부적인 기술과정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학습에 사용된 음악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Output으로 외부에 나타났다(Rn. 515-516).

또한 피고는 음악모델을 학습하기 위하여 완전한 음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은 제시하였지만, 왜 문제된 개별 음악저작물을 각각 전체적으로 복제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Rn. 517-518).

바. 네 번째 요소: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요소에서도 법원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였다(Rn. 519-529). 원고는 관련시장을 음악저작물을 직접 소비하는 오락 음악시장으로 특정하였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재생, 다운로드, 스트리밍,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을 통한 수익이 포함된다(Rn. 520-521).

피고의 음악생성기는 문제된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Output을 무료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었고, 이용자는 이를 저장하거나 공개하여 다시 청취·복제·변형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Output이 원저작물의 이용을 대신하는 대체재(Substitutionsgut)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Rn. 522-523).

fair use를 주장하는 피고는 자신의 이용이 관련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여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법원은 증명책임 규칙은 법정지법이 아니라 실체준거법인 미국법에서 도출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독일법상 2차적 주장책임(sekundäre Darlegungslast)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n. 524-528).

특히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른바 AI 학습데이터의 라이선스시장 자체를 관련시장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원고가 그러한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Rn. 529). 법원이 중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Output이 기존 음악의 청취·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시장에서 원저작물의 대체재로 기능할 가능성이었다.

사. fair use에 대한 종합판단

법원은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학습목적의 복제가 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Rn. 530-531). 다만 이러한 결론이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일반에 대하여 fair use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AI 모델학습이 일반적으로 변형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저작물이 모델에 기억되었고, 그 결과 보호되는 표현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Output으로 다시 나타났다는 구체적인 사정 때문에 fair use가 부정되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이용을 달리 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AI 모델에서 기억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학습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AI 기술 자체의 개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n. 531).

아. 미국법상 권리구제

법원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습목적의 복제에 대해서도 금지청구를 인정하였다. 미국 저작권법 제502조(a)에 따른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³⁰⁾이 제시한 네가지 요소,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배상의 불충분성,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공익을 검토하여 금지명령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Rn. 532-546).

또한 저작권법 제504조(a)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였다. 미국 저작권법상 과책은 손해배상책임 자체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고의 여부는 법정손해배상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Rn. 547-548).

정보제공청구와 관련해서는 미국법과 독일법의 구조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다. 미국법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26조(Rule 26)에 따른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하여 취득하는 반면, 독일법에서는 저작권법상의 정보제공청구와 민법(BGB) 제242조 등에 따라 실체법상 정보제공청구가 인정된다(Rn. 549-551).

그런데 독일 법정에서 미국 실체법을 적용하면서 독일 절차법을 적용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30) eBay Inc. et al.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391 (2006). 같은 판결 392면은 금지명령의 발령이 “may”라는 문언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밝힌 부분이다.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인 실체법상 청구권에 공백이 발생한다. 법원은 이를 국제사법상 규범흠결(Normenmangel)로 파악하고 민법 제242조를 유추적용하여 정보제공청구를 인정하였다(Rn. 549-553).

(7) 증거신청의 기각과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한 선결 제청의 거부

가. 피고의 증거신청 모두 기각

이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에게 권리관리계약(Berechtigungsverträge)과 상호관리계약(Gegenseitigkeitsverträge)³¹⁾의 제출을 명하여 달라는 민사소송법 제14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원고의 청구권자 자격이 이미 제출된 추가약정으로부터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Rn. 238).

둘째, 여섯 음악저작물 또는 그 일부가 모델에 저장 또는 기억되어 있는지에 관한 감정신청은 앞서 본 세 가지 이유(법률문제성, 재판부가 전제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명의 불필요, 피고의 반박 및 대안적 설명의 부재)로 기각되었다(Rn. 261).

셋째, 재인식가능성에 관한 감정신청은 재판부 구성원 자신이 평균적 음악청취자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Rn. 323).

넷째, 미국 저작권법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감정신청은 법원이 법전·판례 및 막스플랑크연구소 도서관 자료를 통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Rn. 426). 법원은 확정된 외국법에의 포섭은 법원 고유의 임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원고의 재인식가능성 관련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피고의 항변도 배척하였고(Rn. 322), 변론종결 후 제출된 양 당사자의 서면도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n. 558).

나.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한 선결 제청의 거부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절차를 중지하고 EU기능조약 제267조 제2항에 따른 선결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였다(Rn. 555-557).

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선결 제청 여부가 자신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다음의 이유를 들었다. 첫째, 정보사회지침상 복제 및 공중전달이라는 이용행위의 해석에 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해석지침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번 판결을 위하여 제청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이 모델

31) 상호관리계약(Gegenseitigkeitsvertrag)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상대방의 레퍼토리에 속하는 저작권을 자국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각 단체는 외국 파트너단체를 대신하여 이용허락,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의 권리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내부에서 정보사회지침 제2조의 의미로 복제되었다는 이 사건의 판단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와 모순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위해 원용한 판결들은 정확하게 재현되지 않았다. 셋째, 이 사건은 애초에 DSM 지침 제4조의 TDM 제한사유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물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의 법리가 유럽 차원에서 검토될 것인지는 상급심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적어도 제1심 단계에서는 법원이 스스로 그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2025년 ChatGPT 판결의 법리를 음악생성모델로 확장한 점

이 판결은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분석틀을 처음 제시한 것이라기보다, 뮌헨 제1지방법원이 2025년11월 11일 ChatGPT 판결³²⁾에서 제시한 법리를 음악생성모델에 적용하여 보다 정교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위 2025년 판결을 인용하고 있지 않고, 단계별 분석의 근거로도 학설과 함부르크 법원의 LAION 결정을 들고 있다. 그럼에도 두 판결의 해당 부분은 인용문헌과 문장구성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문언상의 연속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2025년 판결은 이미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물 이용을 ① 학습자료의 준비, ② 데이터 분석 및 모델학습, ③ Prompt와 Output을 통한 학습된 모델의 이용이라는 세 단계로 구별하고, 모델학습의 결과 저작물이 모델 내부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기억되어 남는 경우를 독립적인 복제의 문제로 다루었다. 2026년 판결도 이러한 분석구조를 따르면서, 언어모델의 노래 가사가 아니라 트랜스포머 모델과 확산모델 등이 결합된 음악생성모델의 음악저작물에 이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의 의의는 단계별 분석방법을 새로 제시한 데 있다기보다, 2025년 판결에서 제시된 기억현상 법리가 기술적 구조와 저작물의 유형이 다른 음악생성모델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2) 기억현상과 복제의 관계를 정교화한 점

이 판결이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을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AI 모델의 파라미터는 곧 학습저작물의 복제물이다”라는 일반명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2025년 판결은 단순한 정보·패턴의 추출과 기억현상을 구별하였고, 2026년 판결은 기억현상에서 말하는 완전성(Vollständigkeit)이 학습자료가 양적으로 전부 또는 정확히 동일한 형태로 저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32) LG München I, Endurteil vom 11.11.2025, 42 O 14139/24 (GRUR-RS 2025, 30204). 이 판결의 소개에 대해서는 박희영, 뮌헨지방법원: OpenAI ChatGPT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5.11 참조.

단순한 패턴이나 상관관계를 넘어 내용 자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용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음악데이터가 원래 오디오파일의 형태 그대로 저장되지 않고 여러 단계의 수치적 변환을 거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보호되는 표현의 수용이 인정되고 그 표현이 모델을 통하여 다시 간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다면 그러한 기술적 형태만을 이유로 복제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이 판결에는 복제개념을 상당히 넓게 여는 판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구체적 식별가능성(konkrete Abgrenzbarkeit)은 저작물의 성립·보호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복제권 침해의 별도 구성요건은 아니라고 보았다(Rn. 271-274). 나아가 평균적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복제의 요건은 아니며,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완전한 접근과 같은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만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복제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n. 278).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Prompt만으로 저작물이 재현되었으므로 이 판시가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통상적인 Output에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특별한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지각·재현할 수 있는 기억현상까지 복제로 포섭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모든 AI 모델이나 모든 학습저작물이 모델 내부에 복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는 전체 학습데이터가 아니라 소송대상인 여섯 음악저작물이 실제로 기억되어 있는지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비보호적인 스타일·장르·패턴·상관관계의 학습과 보호되는 표현의 기억현상 사이의 경계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3) TDM과 기억현상의 경계를 재확인하고 보완한 점

TDM과 기억현상의 구별 자체도 이번 판결에서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2025년 ChatGPT 판결은 이미 저작권법 제44b조와 DSM 지침 제4조가 AI 모델학습에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학습코퍼스를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복제와 달리 모델 내부에 남는 기억현상은 더 이상의 데이터분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TDM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6년 판결은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하였다. 첫째, AI Act 제53조 제1항 c·d호는 이 사건 침해행위 이후에 발효하였을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EU 저작권법의 준수와 학습콘텐츠의 투명성을 요구할 뿐, DSM 지침 제4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저작권 제한사유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피고가 YouTube의 Rolling Cipher를 우회하여 음악저작물을 취득하였으므로 TDM 제한사유가 요구하는 적법한 접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기존의 TDM과 기억현상의 구별을 재확인하면서 AI Act와 학습자료의 취득경위까지 TDM 판단에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억현상이 모델학습의 비의도적·부수적 결과로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항상 TDM과 독립된 복제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법원은 스스로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한 선결적 제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므로(Rn. 557),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명은 상급심 단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4) 음악 Output의 침해판단을 '재인식가능성'으로 구체화한 점

2025년 ChatGPT 사건에서는 노래 가사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텍스트로 Output에 재현되어 침해 여부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였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선율·화성·리듬·형식 등이 변형된 음악 Output에서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원저작물과 Output의 전체적인 인상(Gesamteindruck)이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원저작물의 보호를 근거짓는 창작적 요소가 Output에서도 재인식 가능한지(Wiedererkennbarkeit)를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Mio/Konektra 판결³³⁾을 반영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법원이 미국법상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심사와 EU법상 재인식가능성 심사가 결과적으로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이다(Rn. 487-489). 두 법제 모두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의 차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평균적 수용자의 관점에서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생성형 AI Output의 침해판단에서 비교법적 수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르면 생성형 AI Output의 침해판단에서도 먼저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를 특정하고, 그것이Output에서 재인식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러한 분석은 음악뿐 아니라 이미지·영상 등 다른 생성형 AI Output의 침해판단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요소가 보호되는 표현이고 어느 정도의 재현이 재인식가능성을 충족하는지는 저작물 유형별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5) 모델의 제공 자체에 대한 공중전달 법리를 확장한 점

공중전달에 관한 판단은 2025년 판결과 비교할 때 이번 판결에서 가장 새롭고 논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2025년 ChatGPT 판결은 Output 및 그 호출가능성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이용제공을 인정하였다(판결 주문 1b, Rn. 258-272). 그 논거는 ① 전달행위에는 호출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② 저작물이 이용자의 호출을 위하여 미리 보관된 유형적 고정의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③ 모델의 무작위성 때문에 제공되는 내용과 실제 재현되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문제되지 않고, ④ 챗봇은 인터넷 접속과 단말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원고도 제19a조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15조 제2항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판단되지 않았다.

33) CJEU, Judgment of 04.12.2025, C-580/23, C-795/23, Mio u.a.; BGH, Urteil vom 02.07.2026, I ZR 96/22, USM Haller II.

반면 2026년 판결은 동일한 Prompt에서도 원하는 음악저작물이 항상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문제된 Output을 얻기 위하여 최대 176회의 입력이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특정 저작물에 접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9a조의 공중이용제공을 부정하였다. 여기에는 판단수준의 이동이 있다. 2025년 판결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 요건을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차원에서 판단한 반면, 2026년 판결은 그것을 개별 저작물의 호출가능성의 차원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25년 판결이 명시적으로 무관하다고 보았던 확률적 편차가 2026년 판결에서는 제19a조를 부정하는 핵심논거가 되었다.

다만 2026년 판결의 이러한 판단은 순수한 개념적 판단이 아니라 주장 및 증명책임의 배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법원은 원고가 이 요건을 충분히 주장 및 증명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추가 Output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다(Rn. 316).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제19a조가 인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모델 및 음악생성기의 제공과 Output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공중전달을 인정하였다. 즉 특정 저작물을 on-demand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호출할 수 없더라도, 모델 내부에 기억된 저작물이 Output으로 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보다 넓은 공중전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2025년 판결에서는 예비적 청구로만 주장되었을 뿐 판단되지 않았던 쟁점이므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공중전달권의 인정은 2026년 판결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2025년 사건에서는 모델 내부의 복제만이 소송대상이었던 반면(판결 주문 1a), 2026년 사건에서는 모델 및 음악생성기의 제공 자체가 독립된 침해행위로 다투어졌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다만 이 판단 역시 원고가 예비적으로 제기한 청구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점(Rn. 315)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판단은 생성형 AI의 확률적 생성구조와 기존 공중이용제공 법리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특히 특정 저작물을 이용자가 선택한 시간에 호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9a조는 부정하면서, 동일한 확률적 호출가능성을 기초로 일반적인 공중전달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향후 상급심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6) AI Output의 직접 책임을 재확인하고 DSA 면책과의 관계를 구체화한 점

Output의 피고 귀속에 관한 기본논리는 2025년 ChatGPT 판결과 연속선상에 있다. 당시 법원은 단순한 Prompt의 입력은 복제과정을 촉발하는 데 그치고, 모델의 학습·구조 및 기억현상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Output에 대한 행위지배를 가진다고 보았다. 2026년 판결도 이러한 논리를 음악생성모델에 적용하였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DSA 제6조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면책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금지청구에 대한 제6조의 적용 가능성 자체는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결과개방적 프롬프트에서는 이용자가 Output의 보호되는 음악적 내용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Output은 피고 자신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을 부정하였다. 나아가 유럽사법재판소가 '자기의 것으로

삼음'(Zu-Eigen-Machen)을 기준으로 정의한 바 없다고 밝힘으로써, 독일에서 발전해 온 '자기의 것으로 삼음' 법리를 DSA 제6조의 해석에 그대로 옮기는 데 거리를 두었다(Rn. 410).

그러나 이를 모든 생성형 AI Output이 항상 모델 제공자의 정보라는 일반명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판결의 논리를 따르면, 이용자가 상세한 Prompt나 입력자료를 통하여 보호되는 표현의 생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행위귀속 및 DSA 적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7) 미국에서의 학습복제와 fair use를 함께 판단한 점

2026년 판결의 또 다른 특징은 독일 내의 모델 내부 복제와 Output 침해뿐 아니라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습목적 복제까지 함께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법원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모델학습 및 이에 필요한 복제에는 미국법을 적용하여 fair use를 직접 검토하였다. 이는 2025년 ChatGPT 판결에는 없었던 쟁점이다.

법원은 AI 모델학습이 일반적으로 변형적 이용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Bartz와Kadrey 판결에서는 학습저작물이 Output에서 침해적이거나 상당한 정도로 재현되지 않았던 반면,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음악적 지시가 없는 Prompt에서도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Output이 생성되었다는 점을 중요한 차이로 보았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Output이 기존 음악의 청취·스트리밍·다운로드 시장에서 원저작물의 대체재로 기능할 가능성과 Rolling Cipher를 우회한 학습자료의 취득경위를 불리하게 고려하였다. 반면 AI 학습데이터의 라이선스시장 자체는 원고가 관련시장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결은 "AI 모델학습은 공정이용이 아니다"라는 일반적인 판단이라기보다, 학습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이 기억되어 실질적으로 유사한 Output으로 다시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용형태에 대하여 fair use를 부정한 판결로 이해해야 한다.

8) 절차적 측면: 증거신청의 전면적 기각과 제청 거부

이 판결의 실체적 판단은 상당 부분 사실인정에 의존하고 있다. 즉 모델 내부에 기억현상이 존재하는지, 문제된 Prompt가 단순하고 결과개방적인지, Output에서 원저작물이 재인식되는지는 모두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 쟁점에 관한 피고의 감정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286조에 따른 자유심증에 의하여 원고가 제출한 Output과 정보기술 분야의 연구문헌만으로 기억현상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전문적 기술사항에 관한 사실인정을 법원이 직접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항소심의 주요 공격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인식가능성에 관하여 재판부가 스스로를 평균적 청취자로 규정한 것(Rn. 323)은Metall auf Metall 사건 이후 독일 판례가 인정해 온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섯 곡 모두에 대하여 감정 없이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한 선결 제청까지 거부됨으로써(Rn. 555-557), 이 판결은 제1심 단계에서 사실인정과 EU법 해석을 모두 자체적으로 종결한 형태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재판부가 2025년 ChatGPT 사건에서도 선결 제청을 거부하였다는 점인데, 당시 제청을 신청한 것은 원고(GEMA)였다(Rn. 309-312). 즉 동일한 재판부가 두 사건에서 서로 반대되는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모두 거부한 셈이다. 2025년 판결은 그 이유의 하나로, 헝가리 법원이 제청한 사건³⁴⁾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보호저작물에 의한 모델학습이라는 핵심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제청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태도는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생성형 AI와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법리의 유럽적 통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특히 2025년 판결과 2026년 판결이 저작권법 제19a조의 요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판단수준을 채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일 재판부 내에서도 기준이 유동적이라는 사정 자체가 상급심 또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해명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9) 종합적 시사점

2025년 ChatGPT 판결과 함께 보면 이번 판결은 뮌헨 제1지방법원이 생성형 AI의 기억현상과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판례의 연장선에 있다. 2025년 판결이 언어모델을 대상으로 모델 내부 기억현상의 복제 해당성, TDM의 한계 및 Output에 대한 사업자의 직접책임이라는 기본구조를 제시하였다면, 2026년 판결은 이를 음악생성모델에 확장하면서 기억현상의 의미와 음악 Output의 재인식가능성을 구체화하고,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공중전달, DSA 제6조 및 미국법상 fair use까지 판단범위를 넓혔다.

다만 두 판결의 법리를 모든 생성형 AI에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두 사건 모두 문제된 저작물이 실제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었고, 비교적 단순한 Prompt를 통하여 보호되는 표현이 Output에서 재인식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였다. 2026년 사건에서는 Rolling Cipher를 우회한 학습자료의 취득이라는 추가적 사정도 존재하였다.

결국 두 판결이 보여주는 핵심은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물 이용을 하나의 AI 학습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료의 취득과 준비, 모델학습,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 모델의 제공 및 Output 생성이라는 각 단계에서 보호되는 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34) EuGH, Rechtssache C-250/25 (Budapest Környéki Törvényszék 제청, 2025.4.3. 접수). 2025년 판결은 이 제청의 질문이 기술적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원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럽사법재판소가 저작권 문제의 핵심인 보호저작물에 의한 모델학습을 파악하여 충실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확실하다고 밝혔다(Rn. 312).

※ 원헌 제1지방법원의 2025년 ChatGPT 판결과 2026년 Suno 판결의 비교표

대상	GPT-4·GPT-4o 언어모델, 노래 가사	v3.5·v4 음악생성모델, 음악저작물	텍스트에서 음악으로 법리 확장
이용단계의 구별	학습자료 준비-모델학습-Pro mpt·Output 이용의 3단계 구별(Rn. 166)	동일한 단계구분의 적용(Rn. 240). 2025년 판결을 인용하지 않고 동일한 문헌·판례를 원용하나 문장구성은 사실상 같음	단계별 접근의 재확인, 문헌상 연속성
기억현상	모델 내부에 재현 가능한 가사가 포함된 경우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	음악적 표현이 재인식 가능한 형태로 포함된 경우 제16조의 복제	기술·저작물 유형을 넘어 적용
기억현상의 범위	단순 정보추출과 모델 내부의 내용 수용을 구별	완전성은 정확한 전부 저장에 아니라 패턴·상관관계를 넘는 내용의 적어도 일부 수용이라고 명확화. 식별가능성은 복제의 요건이 아니며, 평균적 이용자의 접근가능성도 요구되지 않음	복제 기준을 정교화·확장
TDM	1단계의 필요한 복제는 가능, 2단계의 기억현상은 제외	동일. AI Act 제53조는 침해 이후 발효하였고 별도 제한사유도 아님. Rolling Cipher 우회로 적법한 접근도 부정	기존 법리 보완
Output 침해	가사의 동일·변형된 재현에 복제 인정	보호되는 음악적 요소의 재인식가능성을 기준으로 복제 인정. 미국법상 실질적 유사성 기준과 일치한다고 판시	음악 Output의 침해기준 구체화
제 19 a 조의 공중이용제공	Output 및 그 호출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판결 주문 1b, Rn. 258-272). 호출가능성만으로 전달행위가 성립하고, 유형적 고정물의 부존재나 무작위성에 따른 Output의 편차는 무관하며, 챗봇을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선택한 장소·시간' 요건 충족	반복 Prompt(최대176회)가 필요한 점 및 원고의 주장·증명 부족을 이유로 부정(Rn. 316)	'선택한 시간' 요건의 판단수준이 서비스 접근가능성에서 개별 저작물의 호출가능성으로 이동. 2025년에 무관하다고 본 확률적 편차가 2026년에는 핵심 논거가 됨
일반적 공중전달	원고가 제19a조 각각에 대비하여 제15조 제2항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판단되지 않음.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공중전달'에 관한 판시 없음	모델·음악생성기 자체의 제공과 Output에 제15조 제2항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공중전달 인정(Rn. 369-388, 389-39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2026년 판결에서 처음 판단된 쟁점. 모델의 '제공' 자체를 독립된 침해행위로 구성한 점도 새로움
Output의 귀속	단순 Prompt의 경우 사업자에게 행위지배(Tather rschaft) 인정	동일한 기본논리 적용	판례의 연속성
DSA	DSA는 전혀 언급되지 않음. 다만 피고를 호스팅 플랫폼	DSA 제6조의 면책을 명시적으로 부정. 자기의 것으로 삼음(Zu-Eigen-Machen)	중개자 면책과 AI Output의 관계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판단

	운영자나 하드·소프트웨어 제공자와 구별하여 직접적 전달행위를 인정(Rn. 264)	은 EU법상 기준이 아니라고 판시(Rn. 40 8-410)	
미국법상 학습	핵심 판단대상이 아님	미국 내 학습복제에 미국법 적용, de minimis 항변 배척, fair use 부정	새로운 국제적 쟁점
학 습 자 료 의 취득·이용조건	TDM 권리유보 등이 주요 문제	Rolling Cipher 우회가 TDM 및 fair use 판단에 중요	학습자료 출처의 중요성 부각
증거·절차	기억현상은 감정 없이 민사 소송법 제286조의 자유심증으로 인정(Rn. 168-172). 기각된 감정신청은 없음. 원고가 신청한 선결적 제청을 거부(Rn. 309-312) — 헝가리 법원의 제청(C-250/25)으로 핵심 쟁점이 다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논거	피고의 감정신청 4건 및 민사소송법 제142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Rn. 238, 261, 323, 426). 피고가 신청한 유럽사법재판소 선결 제청도 거부(Rn. 555-557)	두 사건 모두 제1심에서 EU 법 해석을 자체 종결 동일 재판부가 서로 반대되는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각각 거부. 2026년에는 증거조사까지 배제하고 사실인정을 자체 종결

참고자료

- 뮌헨 제1지방법원 판결문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BECKRS-B-2026-N-17961?hl=true>).
- Tobias Voßberg, “Atemlos durch die Nacht” im KI-Modell kann Urheberrechte verletzen. beck-aktuell, 31.07.2026 (<https://www.beck-aktuell.de/node/203211>)
- Soppe/Schubert, Gema siegt gegen Suno, Legal Tribune Online, 31.07.2026, (https://www.lto.de/persistent/a_id/60570)
-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 S. 508, 526 f. (2023).
- Bartz et al. v. Anthropic PBC, No. 3:24-cv-05417 (N.D. Cal. 2025).
- Richard Kadrey v. Meta Platforms, Inc., No. 23-CV-03417-VC, 2025 WL 1752484 (N.D. Cal. 2025).
- eBay Inc. et al.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391 (2006).
- 박형욱, 유럽사법재판소에 헝가리 지방법원이 구글의 생성형 AI 챗봇과 저작권에 관한 선결재판을 제청, 유럽 법제동향, 로앤비, 2025.8.
- 박희영,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TDM 제한- 함부르크 지방법원 판결(Kneschke vs. LAION)-, 이슈리포트 2024-28, 한국저작권위원회.
- 박희영, 함부르크 고등법원, TDM은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작성에도 적용된다고 판결(OLG Hamburg, Urteil vom 10.12.2025 - 5 U 104/24(Kneschke vs. LAION), 이슈리포트 2025.12, 한국저작권위원회.
- 박희영, 뮌헨지방법원: OpenAI ChatGPT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판결, 이슈리포트 2025.11, 한국저작권위원회.